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화개삼거리 인공폭포 주변 버스 승강장 설치 요청

□ 신청 원인

- 민원인은 시 외곽지인 ○○동에 소재하고 있는 ○○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고령의 파크골프 동호회원으로, 자가용 운전을 하지 않아 파크골프장 이용 시 매번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 특히, 최근 파크골프장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버스 승강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고령의 이용자가 상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파크골프장 인근 화개삼거리 인공폭포 주변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담당부서는 해당 파크골프장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 이용자의 대중교통편의 증진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하고 있으며,
- 시내버스 무료 승차 지원사업의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성은 있으나 기존 승강장과의 거리가 약 400m 정도여서 일반적인 승강장 설치 사례와 비교해 멀다고는 볼 수 없어 승강장 신설에 난색을 표명.

□ 사실관계

- ○○천 파크골프장은 최근 파크골프 동호회원이 급증하면서 제방 주변 주차 혼잡이 심화되고 있고 고령의 동호회원들은 자가용 운전이 감소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 시 외곽지에 위치한 ○○천 파크골프장과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이 약 400m 떨어져 있어, 일반적으로 외곽지나 농촌지역에는 500m~1km 정도에 설치되는 기존 승강장 설치 사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상주시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무료 승차 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승강장 설치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관계법령 등

-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 판단 및 결론

- 민원인이 요청한 버스 승강장 신설 건은 ○○천 파크골프장과 가장 가까운 버스 승강장이 약 400m 떨어져 있어, 일반적으로 외곽지나 농촌지역에는 500m~1km 정도에 설치되는 기존 승강장 설치 사례와는 차이가 있으나,
- 고령화되는 지역의 여건이나 고령의 파크골프 동호회원이 증가되는 현실적인 여건 및 상주시의 시내버스 무료 승차 지원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승강장 신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서에 승강장 신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 시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수렴하여 승강장 설치 예산을 관련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으며 ○○동에서는 현장 확인 후 적절한 위치에 승강장을 설치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경지정리지구 내 중단된 배수로 공사 조속 시행 요청

□ 신청 원인

- 민원인은 시 외곽지에 위치한 ○○동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 공사가 토지 보상 문제로 콘크리트 U관 배수로 설치가 절반 정도만 시행되고 남은 구간은 토사 농수로로 방치되고 있어 집중 호우 발생 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주변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단된 배수로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담당 부서는 해당 경지정리지구 내 중단된 배수로 공사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잔여 구간의 공사비도 약 1억원 정도 예상되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예산의 확보 순위에 밀려 잔여 공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으로 공사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음.

□ 사실관계

- 상주시는 2021년도에 시 외곽지에 소재하고 있는 ○○동 경지정리지구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경지정리 당시 설치되어 있는 토사 농수로를 콘크리트 U관 배수로 공사로 추진하였으나 공사 구간 중간에 있는 감나무밭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거부함에 따라 전체 500m 공사 구간 중 약 260m 공사를 진행하고 남은 구간은 기존 토사 농수로로 남아있는 상태로 공사는 중단되었음.

- 이후 민원인인 당시 통장이 개인 비용으로 보상을 거부한 감나 무밭 소유주를 설득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분할 측량까지 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준비하였고 상주시에서는 이후 대상부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잔여 구간의 콘크리트 U관 배수로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 이로 인해 집중호우 시 경지지구 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주변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 관계법령 등

-

□ 판단 및 결론

- 현장 확인 결과 중단된 배수로 공사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가 상습적인 침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조속한 배수로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 담당부서에 경지정리지구 내 중단된 배수로공사가 조속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 시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수렴하여 2025년 3회 추경 시 추가 배수로 공사 예산 90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경지정리 지구 내 가을건기가 끝난 후 동계기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됨.